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가단50533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도기영, 안형윤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아
담당변호사 조인명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0. 12. 28. 접수 제166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아래 돈을 대출받았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08.06.26.	D은행	E	2009.06.25.	425,000,000원 (500,000,000원)	이하 '보증1'이라 한다
2019.01.30.	D은행	F	2019.12.31.	1,350,000,000원 (1,500,000,000원)	이하 '보증2'라 한다

C은 2016. 2. 22.경 유동성 위기로 경영난이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채권상환 유예, 금리감면 등의 지원을 받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었다. B은 2019. 11. 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20. 12. 중순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교체와 보증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 22. B이 C의 최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주인 것을 확인하고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와 B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및 보증 1 및 보증 2의 보증기한 연장 품의를 한 다음 2020. 12. 28. 연대보증인을 B으로, 보증기한을 2021. 3. 26.로 각각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C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보증한 채권자로부터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및 위 사항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고, C과 B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C은 원고 기금이 보증한 대출금을 D은행에게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아(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원고가 채권자인 D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은 위와 같이 보증부대출을 받은 후 2021. 1. 29. 제품 수요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를 원인으로

원금 연체가 발생하여 2021. 2. 25. D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통지 되었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1. 6. 21. 1,670,335,315원(보증1 관련 431,996,361원 + 보증2 관련 1,238,338,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21. 6. 21. 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664,096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1,669,671,219원(보증1 관련 431,332,265원 + 보증2 관련 1,238,338,954원)이

남아있다. 또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9,816,940원을 대지급하였고, 그중 157,132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9,659,808원이 남아 있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21. 6.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8%이다.

3) 원고는 B와 C에게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2021. 7. 14. 수원지방법원 2021차전9331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7. 16. 그 결정이 있었고, 2021. 7. 21. 위 결정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B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의 재산상태

1) B은 2014. 6. 16. 피고로부터 7억 원을 빌린 다음 2020. 4. 16.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G 외 2필지 지상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20. 12.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피고에게 56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미변제된 14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0. 12. 24. 피고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0. 12. 28. 접수 제16683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서울 영등포구 J 도로 16㎡, 서울 영등포구 K 도로 14㎡, 서울 영등포구 L 도로 26㎡의 각 일부 지분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억 원이 넘는 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호증, 을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등기정보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은 피고에 대한 7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매각을 통해서 위 대여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자 부족한 금액(1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B 일가의 가족 선산으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B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20. 12. 중순경 이

사건 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 교체와 보증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22. B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및 보증 1 및 보증 2의 보증기한 연장 품의를 하였으며 2020. 12. 28. 연대보증인을 B으로, 보증기한을 2021. 3. 26.로 각각 변경한 사실은 앞서 1의 가. 2)에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20. 12. 24.) 이전에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C이 2021. 1. 29. 이 사건 보증약정의 대상인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2021. 6. 21. 원고가 D은행에 대출원리금 1,670,335,315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B이 피고에 대한 14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B과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 일가의 선산으로 B의 개인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B의 선친 등의 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B이 소속된 종중(피고는 구체적인 종중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의 소유이고, B이 단지 명의수탁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B은 2019. 11. 15.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의 경영악화 상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6. 16. B에 70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이는 B이 경영한 M회사의 N은행 연체대출금 상황 및 기타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고, 위 돈에 대하여 약 6년간 변제를 받지 못하다가 2020. 12. 10.경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일부 원금(56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었는데, C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미회수 대여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소결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20. 12. 28. 접수 제166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부동산의 표시

1. 경남도 거창군 O 전 1474㎡
2. 경남 거창군 P 임야 17150㎡
3. 경남 거창군 Q 임야 43643㎡
4. 경남 거창군 R 임야 58017㎡. 끝.

